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

발주자(시행자):	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
수급자(시공자) :	(이하 "을"이라 한다)는
당사자는 상기와 같이	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(공사개요)	
공 사 명	

20

20

년

년

월

월

일

일

(공시	וו-ר ו	7
ノブハ	٠и	= 1

공사장소(면적)

공사기간

① 총 공사금액 ___四_千_圓_정(부가가치세 별도임) (₩ 40,000,000원)

착 공

준 공

대금 지급 시기	횟 수	금 액	년 월 일	내 역
	1차		년 월 일	계약금
	2차		년 월 일	중도금
	3차		년 월 일	중도금
	4차			잔금
	5차	₩	/ /	잔 금

② "갑"은 전항의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안되며, 지연 시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 까지연 10%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

2017년 월 일

발주자(시행자) 수급자(시공자)

주 소 : 수원시 연 주 소 : 상 호 : 상 호 :

대표자 성 명: (인) 대표자 성 명: (인)

시공담당 성명: (인)

〈계약일반조건〉

제1조 (공사내역)

- ① "을"은 공사착수 전 "갑"에게 설계도서(도면, 시방서, 공사내역서 등)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은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. 다만, 설계도서에 품질·품명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재료가 품절인 경우 상호 협의하여 달리 결정할 수 있다.
- ③ 전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제2조 (공사의 변경 및 조정)

- ① 공사진행 중 또는 공사완료 후 "갑"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"을"은이에 응할 수 있으며, "갑"은 변경 및 조정에 따르는 추가경비를 "을"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공사완료후 공사변경은 별도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"을"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계약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공사내용 및 공법의 변경을 "갑"에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예정준공일은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잔금 지급시 정산하다.

제3조 (하자보수)

- ① "을"은 공사 완료 후 24개월 이내에 발생한 일부 또는 전부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"갑"과 "을"은 하자보수를 위한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.
- ② "갑"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"을"은 면책된다.

제4조 (이행지체)

- ① "을"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당 공사금액의 1/1,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"갑"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
- ② "을"은 노사분규, 천재지변 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즉시 "갑"에게 통보하고, 당해 사유의 종료시까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"갑"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공사지연의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.

제5조 (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)

- ① "갑" 또는 "을"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.
 - 1. "을"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킬 경우
 - 2. "을"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 - 3. "갑" 또는 "을"이 기타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-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단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한다.

제6조 (권리 및 의무의 양도)

"을"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 할 수 없다. 다만, 공사의 편의 및 공정의 특수성이 있는 때 또는 "갑"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7조 (기타 사항)

- ① "갑"은 "을"이 당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(건축허가 등 주무관청의 인허가, 민원해결 등)에 협조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.
- ② "갑"과 "을"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서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.
- ③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"갑"과 "을"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 (분쟁의 해결)

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,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 해결한다.

제9조 (계약의일반조건): 2016년월 일 기 체결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시행 한다.